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항공기 제작사의 ‘활주로종단 초과 인식 및 경고시스템’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대이륙중량이 5천 7백킬로그램을 초과하고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에 대한 ‘활주로종단 초과 인식 및 경고시스템’ 장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해당 장치를 안정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0. 31. ~ 12. 1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2026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감항증명을 받는 비행기로서 최대이륙중량이 5천 7백킬로그램을 초과하고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를 운항하려는 자나 소유자등은 제10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활주로종단 초과 인식 및 경고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감항증명을 받는 비행기 중 항공기 제작국가 정부로부터 활주로종단 초과 인식 및 경고시스템에 대한 인증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종의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활주로종단 초과 인식 및 경고시스템을 갖추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항공안전 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(활주로종단 초과 인식 및 경고시스템에 관한 경과조치) <u><신 설></u>	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항공안전 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(활주로종단 초과 인식 및 경고시스템에 관한 경과조치) <u>① 2026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감항증명을 받는 비행기로서 최 대이륙중량이 5천 7백킬로그램 을 초과하고 터빈발동기를 장착 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 행기를 운항하려는 자나 소유자 등은 제109조제1항제7호의 개 정규정에 따른 활주로종단 초과 인식 및 경고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감항증명을 받는 비행기 중 항 공기 제작국가 정부로부터 활주 로종단 초과 인식 및 경고시스 템에 대한 인증이 지연되는 등 의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별 도로 정하는 기종의 경우에는 2 027년 12월 31일까지 활주로종 단 초과 인식 및 경고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.</u>

(생략)	②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------	---------------------